

미국 연방환경규제입법 최근 동향 및 전망

소병천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미국 트럼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환경은 규제 완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분야로서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및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기존 법제의 방향 및 구체적 이행 사항을 변경하여 환경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버드 및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의 공동연구 자료에 따르면 연방 차원의 환경법제 중 49개의 법령이 과거의 규제수준으로 퇴보하였고 34건은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¹⁾

대표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발표하여 기존의 기후실행계획(Climate Action Plan) 및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등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오바마 정부가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발전을 강조한데 반해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통해 밝힌 트럼프 정부 기후변화 정책의 기본 기조는 청정에너지 개발이 아닌 기존 화석연료 사용을 유지하는 것이다.²⁾ 기후변화 외에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기존 정책을 변경한 또는 변경 중인 내용으로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연방관할권 확대 재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간소화 그리고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의 지정 시 경제적 고려 추가 등이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관련 법제의 경우 오바마 정부 당시 제정된 법률에서 후속 조치를 명문화하여 법률 개정 전에는 정책 변경이 어려우며 트럼프 정부에서도 시행령 등을 통해 일정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변경된 환경 법제를 기후변화, 청정수법, 멸종위기종보호법 등에서 제정된 규정을 통해 기존 정부 정책보다 후퇴한 내용과 화학물질 관련 법제에서 신설된 규제 내용을 살펴본다.

1 <<https://eelp.law.harvard.edu/2018/07/tracking-the-trackers/>> 19.7.12 최종방문.

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unleashes-americas-energy-potential/>> 19.7.12 최종방문.

II 기후변화 관련 법제

전술 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가장 변화가 큰 환경정책은 기후변화정책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기후변화협약 관련 파리협정 서명을 거부하고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여 오던 기후변화 정책을 폐기 또는 대폭 수정할 것을 공약하였다. 취임 이후 실제로 트럼프는 경제성장 및 규제완화를 이유로 기존의 기후변화 정책을 대부분 폐기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8월 21일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적정청정에너지규정(Affordable Clean Energy Rule)을 제정하여 2019년 6월 19일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기존 석탄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주 정부의 계획수립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³⁾

적정청정에너지규정은 기존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최적 배출량 감축 체제의 개념을 발전소 현장 내 열소비율의 효율성 개선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⁴⁾ 이러한 개념은 사실상 발전소 내에만 적용되게 되어 발전소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되 결국 발전소 운영의 최적 생산성 개선에 불과하다. 이는 온실가스감축에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없어 환경단체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산업계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업계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동 규정은 기존 발전소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여 결국 오바마 정부 청정전력계획의 노후 화력발전소 폐기 정책이 기존화력발전소의 배출량 개선을 통한 지속적 운영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규정은 각 주가 달성하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목표 수치를 삭제하고 감축량 설정은 주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일리노이 주 및 하와이 주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몇 개 주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주들이 주 내 산업계의 입김에 휘둘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 규정은 또한 기존 허가받은 오염배출시설이 추가로 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진행되는 허가 절차와 기준을 변경하였다. 기존의 규정이 시설 추가로 인해 전체 시설의 연간배출량이 증가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것과 달리, 신 규정은 시간당 배출량이 심각히 증가하는 경우에만 신규 시설 추가 시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시 기술적 운영을 통해 신규시설 추가 시 허가 과정을 생략 가능하도록 하였다.⁵⁾

이외에도 미 연방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환경청)은 신규 오염배출시설 중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배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⁶⁾과 석유 및 가스 생산 시설의 메탄가스 등의 배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각각 발표하였다.⁷⁾ 이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 대신 청정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3 Emission Guidelines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Existing Electric Utility Generating Units: Revisions to Emission Guideline Implementing Regulations: Revisions to New Source Review Program, 83 Fed. Reg. 44746 (Aug. 31, 2018),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18-08-31/2018-18755>) 19.7.12 최종방문.

4 Id.

5 Id.

6 Review of Standards of Performance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New, Modified, and Reconstructed Stationary Sources: Electric Utility Generating Units, 83 Fed. Reg. 65424 (December 20, 2018)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18-12-20/2018-27052>) 19.7.12 최종방문.

7 Oil and Natural Gas Sector: Emission Standards for New, Reconstructed, and Modified Sources Reconsideration, 83 Fed. Reg. 52056 (Oct. 15, 201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8-10-15/pdf/2018-20961.pdf>) 19.7.12 최종방문.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으로 화석연료를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외에도 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가이드라인 적용을 제정하도록 하는 의무 기한을 기존 2017년 5월 30일에서 2019년 8월 29일로 연장하여 오바마 정부에 시작한 온실가스 정책을 지연시키고 있다.⁸⁾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도 수정 폐기되고 있는데 우선 환경청과 국가고속도로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2021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제조되는 경량자동차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및 연료 효율성 기준을 완화하고 오바마 정부 시기 만들어진 중간점검 등을 폐지하였다.⁹⁾ 또한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속도로 건설 시 해당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를 삭제하였다.¹⁰⁾ 그리고 환경청이 격년으로 발령하는 2019-2020년 재생에너지 자동차 연료의 기준을 수정하여 기존 친환경 바이오 매스 디젤 연료를 강화하는 정책 역시 수정 변경하였다.¹¹⁾ 이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 외에도 대기오염에도 관련이 있어 많은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III 화학물질 관련 법제

미국 화학물질 관련 주요 법률은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TSCA, 이하 TSCA)이다. 1976년 제정된 동 법의 기본 틀은 법 제정 이후 개발되어 시장에 진입한 화학물질을 환경청에서 평가하고 독성물질규제법 목록(TSCA Inventory)에 추가하여 관리하며 해당 목록에 있지 않은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다. 입법 초기부터 TSCA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1976년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위해성 평가 없이 목록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 진입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역시 비용편입분석에 따라 환경청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당수의 많은 신규 화학물질이 엄격한 위해성 평가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화학물질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신규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기존 물질 역시 위해성평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연방의회에서도 수차례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1976년 TSCA의 기본 틀은 40여 년간 지속되었다.

8 Subpart Ba Requirements in Emission Guidelines for Municipal Solid Waste Landfills, 83 Fed. Reg. 54527 (Oct. 30, 201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8-10-30/pdf/2018-23700.pdf>> 19.7.12 최종방문.

9 The Safer Affordable Fuel-Efficient (SAFE) Vehicles Rule for Model Years 2021-2026 Passenger Cars and Light Trucks, 83 Fed. Reg. 42986 (August 24, 2018),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18-08-24/2018-16820>> 19.7.12 최종방문.

10 N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Measures: Assessing Performance of the National Highway System, Freight Movement on the Interstate System, and Congestion Mitigation and Air Quality Improvement Program, 83 Fed. Reg. 24920 (May 31, 2018),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18-05-31/2018-11652>> 19.7.12 최종방문.

11 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 Standards for 2019 and Biomass-Based Diesel Volume for 2020, 83 Fed. Reg. 32024 (Jul. 10, 2018),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18-07-10/2018-14448>> 19.7.12 최종방문.

2016년 6월 오바마 정부에서 프랭크 루텐버그(Frank R. Lautenberg)의원이 발의한 21세기 화학안전법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소위 루텐버그 법안이 통과되어 기존 독성물질관리법 체제에 획기적인 수정이 있었다. 동 법의 핵심은 기존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환경청의 위해성평가 규제가 제한될 수 있었던 것을 경제적 편익 분석을 제외하고 오로지 화학물질로 인한 보건 안전 기준만을 고려사항으로 한 것이다.¹²⁾ 또한 기존 TSCA가 제조기업이 신규 화학물질 제조 이전에 EPA에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를 하고, 이후 90일 내로 EPA가 해당 물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일 EPA가 90일 내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제조기업은 해당 물질을 임의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었으나 동 법안은 EPA가 신규 화학물질이 '지나친 위험성'(unreasonable risk)이 없다는 판정을 내려야만 시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의무적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 화학안전법은 위해성평가에서 제외되었던 기존 화학물질 역시 위해성 평가의 대상으로 하되 모든 기존 물질을 평가하는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화학물질의 위험성 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그 위험성에 따라 위험 대상인 고우선순위 화학물질(High Priority Chemical)과 그렇지 않은 화학물질(Low Priority Chemical)로 분류하고, 고우선순위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절차적으로는 환경청은 법 제정 3년 6개월 내로 20개의 고우선 순위 화학물질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후로는 상시적으로 20개의 고우선순위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2019년 하반기까지 고우선순위 화학물질을 지정하여야 한다.

2019년 7월 현재 환경청은 20여개의 고우선순위 대상 화학물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등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발표된 고우선순위 화학물질 대상 목록에는 7종의 염화솔벤트(Seven chlorinated solvents), 6종의 프탈레이트(phthalates), 4종의 내연제성 화학물질,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방향성 첨가제(A fragrance additive) 그리고 고분자 종합 전구성 화학물질(A polymer pre-cursor) 등 총 20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¹³⁾ 또한 환경청은 20여개의 고우선순위가 아닌 화학물질 역시 2019년 말 지정을 목표로 지정을 위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말 이들 화학물질 지정이 발표되면 2020년 이후 이에 대해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청은 2018년 9월 27일 독성물질규제법 관련 수수료 규정을 발표하고 동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 내용은 독성물질규제법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화학물질 수입, 제조 및 처리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독성물질규제법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제출의무대상자, 제5조에 따른 제4조의 정보제출의무 예외를 신청하는 자, 제6조의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 제조사 등에게 제공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예외 사유를 검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위해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12 동 법안 section 5.

13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list-chemicals-undergoing-prioritization>> 19.7.12 최종방문

화학물질 관련 2016년 개정된 사항 중 상당 부분은 법률로 규정되어 법 개정 이전에는 철회가 어려워 트럼프 정부 역시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규제완화를 하기 어려워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 분야는 타 환경법 분야와 달리 꾸준한 환경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고우선 순위 화학물질 지정에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솔벤트나 페인트 제거용 화학물질 등이 초기와 달리 업계의 로비에 의해 삭제된 것은 앞으로 화학물질 규제가 오바마 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현재 환경청에서 화학물질 관련 부서의 총책임자(Nancy B. Beck)가 화학물질 산업계의 대표적인 로비단체인 미국화학위원회(American Chemistry Council)의 상임이사였다는 점에서 그 우려는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화학물질 규제 관련 퇴행적인 정책의 예로서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TCE, 이하 TCE) 솔벤트 규제를 들 수 있다. TCE는 암 유발 및 기형아 출산의 원인으로 의심되어 오랫동안 규제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오바마 정부는 2016년 12월 16일 산업용 TCE 규제를 위해 독성물질규제법 제6조를 시행하는 두 규칙을 입안하였다.¹⁴⁾

동 규칙에 따르면 첫째, 분무형 또는 증기탈지제(aerosol degreasing, vapor degreasing), 세탁시설의 얼룩제거제(spot cleaning)에 사용되는 TCE의 제조, 수입, 처리, 유통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둘째 수입업자를 포함하여 제조업자, 처리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공급망 또는 판매망을 통해 해당 금지사항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이들의 거래 기록 등을 모두 보관하도록 하였다. 해당 규칙들은 2017년 3월과 5월 공공 의견 수렴절차를 마치고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발효 조치가 예정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시작과 함께 두 규칙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TCE 규제는 정지 상태로 간주된다.

IV 물 관련 법제

물 관련 미국 연방법인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은 미국 수계에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지표수의 수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 수계란 기본적으로 주와 주 사이 또는 외국과의 상업에 사용되는 항행 가능한 수계(navigable water)를 의미한다.¹⁵⁾ 따라서 기본적으로 청정수법은 관할권이 제한되며 작은 수로 및 간헐적 하천과 습지 등의 경우 대부분 주의 관할권에 속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의 오염행위가 주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규제되지 않자 오바마 정부는 2015년 미국수로규정(Waters of the United States: WOTUS rule)을 제정하여 연방법 적용을 확대하였다. 2015년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항행 가능한 수로와 수리학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명백히 연결된 작은 수로 또는 습지의 경우도 연방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농업 및 석유업계의 반발 속에 법원에 위헌성이 제기되었다.

14 81 CFR 91592

15 40 CFR 230.3(s)

16 <https://archive.epa.gov/epa/sites/production/files/2015-05/documents/fact_sheet_summary_final_1.pdf> 19.7.12 최종방문.

관련 산업계의 요청과 2015년 규정이 산업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라고 간주한 트럼프 정부는 2017년 2월 행정 명령을 발동하여 기존 규정의 미국 수계 개념의 개정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이행 가능한 수로와 수리학적 그리고 생태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작은 수로와 습지 그리고 간헐적 하천이 아닌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만이 연방의 관할 대상으로 하였다.¹⁷⁾ 이로 인해 연방 청정수법의 확대 적용을 통해 주 정부의 수질오염규제를 보완하려고 하였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폐기되었다.

V 기타 법제

2018년 7월 미 연방 어류 및 야생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FWS)과 국가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산하 국가해양어류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은 공동으로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ESA) 이행규정의 수정안을 제안하였는데 수정안은 현재 공공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이상 2019년 하반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멸종위기종보호법 제4조 상의 멸종위기종 지정 및 변경 그리고 중요서식지 지정 절차에 관한 변경사항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멸종위기종 지정 및 주요 서식지 지정 과정에 있어서 해당 지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및 기타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¹⁸⁾ 이는 결국 멸종위기 보호대상 종의 지정 및 해당 종이 서식하는 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 지정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 정책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멸종위기종보호법은 그동안 광업, 석유 및 가스 추출 산업, 목재 회사 및 목축업과는 대척점에 있었다. 산림지역이나 야생지역이 주 산업지인 이들 산업계는 해당 산업계의 개발행위로 인해 멸종위기종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 개발이 제한되고 나아가 사업운영 방식을 변경하도록 정부가 요구할 수 있어 경영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트럼프 정부는 선거기간 중에 이들 산업계의 이익을 반영하여 이들 산업계에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러한 개정안은 해당 공약의 이행조치라고 할 것이다.

또 다른 환경 규제 완화 시도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검토기간을 단축하여 주요 인프라 사업의 허가를 2년 내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청과 연방정부 12개 기관 상호 간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 중이다.¹⁹⁾ 미국 연방 환경법제의 핵심인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제 102조는 보건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의 행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실시 주체는 관련 연방 기관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환경법의 기본 원칙인 사전

17 <https://www.epa.gov/wotus-rule/revised-definition-waters-united-states-proposed-rule>) 19.7.12 최종방문.

18 EPA, Endangered Species Act Proposed Revisions to the Regulations, 2018. (<https://www.fws.gov/endangered/improving_ESA/2018-Proposed-Regulation-Revisions-Sec%204-and-7-web.pdf>)

1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executive-order-establishing-discipline-accountability-environmental-review-permitting-process-infrastructure/>) 19.7.12 최종방문

예방원칙을 보장하는 핵심제도이다. 아직 양해각서가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만일 체결되는 경우 12개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부절차를 개정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 말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VI 결론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연방 환경법제는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책 폐기 및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의 환영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 속에 이러한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변경은 의회 동의를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관련 법제에서는 2016년 21세기 화학안전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로 그 후속조치의 시한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없는 한 화학물질 규제라는 큰 틀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검토한 많은 부분들이 국내 환경 법제에는 시사점보다 반면교사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단지 화학물질 관련 화학물질 제조, 수입, 유통, 처리업자에게 통계조사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도 시사점이 있다. 특히 미국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 화학물질 정보의 원칙적 공개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절차가 새로 시행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이기는 하지만 많은 화학 관련 업체가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신청을 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현행 제도와 달리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의 환경정책과는 달리 캘리포니아 주 등과 같은 일정 주는 친환경적 정책을 고수 또는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 대신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일 자리에 연동시키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의 2016년 미래에너지 일자리법(Future Energy Job Act)을 필두로 2019년 메릴랜드 주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법(Clean Energy Jobs Act)의 주 의회 통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법률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과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많은 투자 등은 새로운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